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. 4. 5 선고 2016가단9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4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경북 울진군 C 전 2,088㎡를 인도하고,
나. 2013. 4. 5.부터 제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4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금전청구에 관하여 '2013. 4. 6.부터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매년 4. 5.에 4,000,000원을 지급하라'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주문 제1의 나항의 오기로 보인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김동휘

별지